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부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합의서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위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20~202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 교섭·협의를 할 때까지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제1조(교원 수급)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수립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한다.

제2조(교장 및 교감 보전수당 인상) 교육부는 교장, 교감의 보전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교원의 업무경감 등) 교육부는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강화 등 학교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제4조(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① 교육부는 교원의 호봉획정시 사립학교 직원 경력 인정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교육부는 임용권자가 다른 사립학교 교원 간 혹은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 간 이루어지는 인사교류(파견 등)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① 장애인 교원의 처우 개선 정책 추진 시 장애인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원 정책 추진 시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

도록 노력한다.

제6조(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① 유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개정에 노력한다.
- ②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밀학급 해소 등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생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위하여 보건교사 정원확대와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교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한 영양교사 정원확대에 노력한다.

제9조(사서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서교사 정원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도서 구입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하도록 안내한다.

제10조(특수교육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교육부는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 ③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대상을 현행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을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제2장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제11조(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 교육부는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 인상, 교감 중요직무급·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원로교사 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실업계 교원의 상통직경력 인정 확대) 교육부는 경력환산을 상향 인정 기준과 관

련하여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에 대하여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또는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토록 노력한다.

제13조(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의 차별 해소)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원적을 둔 교사에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한다.

제14조(여교원의 모성보호 등) 교육부는 여교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 ① 교육부는 교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사용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안내한다.
- ② 교육부는 학교시설개선사업 추진시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제15조(교권보호 대책마련) 교육부는 교권보호 정책 마련 및 교원지위법 하위령 개정 시 한국교총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16조(교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활동) 교육부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 구성원간 존중과 배려를 주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17조(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18조(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방안 마련 등)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성적 평가체제 변경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9조(수석교사제 지원) ① 교육부는 수석교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학교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② 교육부는 수석교사의 역량강화 및 질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의 직위 분류시 교장, 교감, 교사 외에 수석교사가 명시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20조(연수 기회 확대 등)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부모교육 내실화) 교육부는 청소년기 학생의 부모준비교육에 대한 교원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대상 ‘부모준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22조(교육콘텐츠 보급 노력)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23조(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 및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

제24조(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의 채용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인력풀을 시도교육청에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보 칙

제25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본 합의는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